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
재위촉 동의안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재위촉 동의안

제안연월일: 2024. 3. 21.

제안자: 임태근

찬성자: 양순임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후 재위촉하고자 함

2. 재위촉 대상자

성명	생년월일	자격 및 주요경력	위촉구분	임기
김근확(남)	1982.9.16.	- 변호사시험 3회 現) 변호사 김근확 법률사무소	재위촉	2022. 4. 1. ~ 2024. 3. 31.

3.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개요

가. 위촉인원: 1명(정원 3명이내)

나. 임 기: 2024. 4. 1.~2026. 3. 31.(재위촉)

다. 입법·법률고문 자격(다음 중 하나의 요건 충족)

-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
-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
-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

라. 소요예산: 5,360천원

- 고문료 4,800천원(200천원×12회×2년)
- 회의참석수당 560천원(70천원×4회(분기별 1회)×2년)

4. 입법·법률고문 직무

-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
-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
-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
-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
- 성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
-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

5. 관계법령

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
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
2.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
3.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

② 입법·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법·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6조(임기)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의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